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20.4.7. 개정, '22.4.8. 시행)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별표 1)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자격기준을 규정

나.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신설(안 제12조제2항 별표 2)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개별업무 범위를 규정

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2조)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단체에서 수련과정을 이수
하고 해당 영역에서 소정의 기간동안 업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2호 중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을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작업치료학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간에 대하여 수련을 마친 것으로 본다.

1.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년
2.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u>사회사업학을</u>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생략) ③~④ (생략)	제3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사회사업학·작업치료학을</u> -----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종류 등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1.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이 표에서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간호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	1.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작업치료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
	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3.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2급	1.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	---	---	--

비고: 외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수련을 받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제12조제2항 관련)

1. 공통 업무

-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 나. 정신질환자들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다.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마.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 사.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2. 개별 업무

-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1)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 2)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 나. 정신건강간호사
 - 1) 정신질환자들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 2)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 2)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 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1)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작업수행 평가 및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요법적 훈련·치료**
 - 2)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의 **작업요법적 교육 및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과 수행**

< 의안 소관 부서명 >

정신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202-3861